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 면제 사유가 추가되고 특정증명서 발급범위 확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서식을 수정함(안 별지 제11호 및 제11-1호 서식)

3.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목록, 제11호 서식 및 제1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 식 목 록

서식 번호	명 칭	관 련 법 령	비 고
1	취임보고	규칙 제7조제1항	
2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리개시(대리종료) 보고	규칙 제7조제2항	
3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 임면보고	규칙 제8조	
4	직인보고	규칙 제9조	
5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규칙 제11조	
6	출장소 설치 보고	규칙 제12조제1항	
7	출장소 업무종료 보고	규칙 제12조제2항	
8	사무소 이전보고	규칙 제13조제1항	
9	행정구역 변경 보고	규칙 제14조제1항	
9-1	도로명·건물번호 변경 보고	규칙 제14조제1항	
10	인계인수보고	규칙 제14조제6항	
1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규칙 제19조제1항	
11-1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규칙 제19조제1항 규칙 제21조의3	
12	위임장	규칙 제19조제1항	
13	멸실의 고시	규칙 제20조	
14	가족관계등록신고(또는 신청)의 최고	법 제38조제1항	
15	추후보완신고의 최고	법 제39조	
16	가족관계등록신고(또는 신청)의 제2차 최고	법 제38조제2항	
17	접수인	규칙 제40조제1항	
18	접수증	규칙 제40조제2항	
19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규칙 제41조제1항	
20	처리상황란	규칙 제42조	
21	신고불수리 통지	법 제43조	
22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규칙 제49조제1항	
23	처분변경 통지	법 제110조제1항	
24	불복신청에 대한 의견 및 기록송부	법 제110조제2항	
25	과태료 납부통지	규칙 제50조제3항	

26	가족관계등록신고(신청)지연사유서	규칙 제50조제6항	
27	과태료 처분 이의서	규칙 제50조제7항	
28	과태료처분의의사건통보	규칙 제50조제7항	
29	기아발견조서	법 제52조제2항	
30	직권정정·기록허가 신청	법 제38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	
31	직권정정·기록서	법 제38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	
32	신고서류목록	규칙 제68조제2항	
33	발송인과 직인	규칙 제68조제3항	
34	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	규칙 제69조제2항	
35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규칙 제81조3호나목	
36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규칙 제82조제1항 1호라목	
37	고지부	규칙 제82조제1항 4호가목	
38	과태료징수부	규칙 제82조제1항 4호나목	
39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규칙 제82조제1항 5호가목	
40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규칙 제82조제1항 5호다목	
41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규칙 제82조제1항 5호마목	
42	장부의 표지	규칙 제82조제2항	
43	편철장목록	규칙 제82조제3항	
44	폐기서류목록	규칙 제85조	
45	각종부책·서류의 폐기인가 신청	규칙 제85조	
46	제적부책 반출 보고	중전 「호적법」 제11조	

[별지 제11호 서식]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신청 대상자 ¹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²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1.가족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특정()통 □부 □모 □배우자 □자녀(성명:)	③상세()통	
	2.기본증명서	①일반()통	②특정 ㉠출생사망실증()통 ㉡인자친생자관계정정()통 ㉢친관미성년후견(□전부 □현재)()통 ㉣개명·성본변경()통 ㉤국적취득상실()통 ㉥성별정정()통	③상세()통	
	3.혼인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특정()통 전(前)배우자성명: _____	③상세()통	
	4.입양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상세()통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상세()통
	6.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	7.수리·불수리증명 ()건			
	8.열람(신고서류) _____년 _____월 _____일 접수 _____신고				
	9.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 ①등본()통 ②초본()통 ③열람()건 본적: _____ 호주: _____ 대상자: _____의				
	특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선택하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포함 □본(本)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뒷부분6자리)	□전부 공개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	공개 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1.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3. 가족관계등록관서 출석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 <input type="checkbox"/> 4. 공무원 등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한 경우	
청구사유					
소명자료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 ³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신 청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⁴	-	
	주소			신청인 자격 _____의 휴대전화번호 등 _____	
위 입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⁴	-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위임장은 별도 첨부)				
20 년 월 일					
○○시(구)·읍·면장 귀하					
* 수수료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1통당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② 신고서류 열람·증명(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수리·불수리 증명 등), 제적부 열람 1건당 200원 ③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뒷면 참조)				
1. 공동상속처럼 신청대상이 수인일 때 신청 대상자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와 별지를 간인(서명)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뒷면 작성방법 5.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서,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4. 신청인 또는 위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117조: 제14조제1항·제2항·제7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뒤 쪽)

1.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②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④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채자재산관리인)
- 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⑥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⑦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며,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 청구사유 : 가사소송관련(○○○의 ○○사건)법원제출용, **신청인의 자격** : 본인의 부, ○○○의 대리인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고서류의 열람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한 때
- ③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 ④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⑤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악을 할 경우
- ⑥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악을 할 경우
- ⑦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
- ⑧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⑨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⑩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⑪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해당법령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신청 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①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 ③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예 :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특정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위 공개신청사유 제①,②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가 제한됩니다.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 ① 종전 「호적법 시행규칙」 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
- ② 종전 「호적법」에 따른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5. 아래의 경우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제적 등의 열람 및 등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제1.의 ①,②,③,④,⑥,⑦ 및 제2의 ⑧,⑨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 등 법령으로 정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때 및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하는 때

※수수료 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⑦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⑧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⑩ 재해의 발생 등 시·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⑪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⑫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별지>

신청 대상자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1.가족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특정()통 □부 □모 □배우자 □자녀(성명:)	③상세()통
	2.기본증명서	①일반()통	②특정 ㉠출생사망실증()통 ㉡인자친생자관계정정()통 ㉢친권미성년후견(□전부 □현재)()통 ㉣개명·성본변경()통 ㉤국적취득상실()통 ㉥성별정정()통	③상세()통
	3.혼인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특정()통 전(前)배우자성명: _____	③상세()통
	4.입양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상세()통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상세()통
	6.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	7.수리·불수리증명 ()건		
	8.열람(신고서류) _____년 _____월 _____일 접수 _____ 신고			
	9.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 ①등본()통 ②초본()통 ③열람()건 본적: _____ 호주: _____ 대상자: _____ 의			
	특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선택하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포함 □본(本) 포함]			
	신청 대상자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1.가족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특정()통 □부 □모 □배우자 □자녀(성명:)	③상세()통
	2.기본증명서	①일반()통	②특정 ㉠출생사망실증()통 ㉡인자친생자관계정정()통 ㉢친권미성년후견(□전부 □현재)()통 ㉣개명·성본변경()통 ㉤국적취득상실()통 ㉥성별정정()통	③상세()통
	3.혼인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특정()통 전(前)배우자성명: _____	③상세()통
	4.입양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상세()통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상세()통
	6.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	7.수리·불수리증명 ()건		
	8.열람(신고서류) _____년 _____월 _____일 접수 _____ 신고			
	9.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 ①등본()통 ②초본()통 ③열람()건 본적: _____ 호주: _____ 대상자: _____ 의			
	특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선택하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포함 □본(本) 포함]			
	신청 대상자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1.가족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특정()통 □부 □모 □배우자 □자녀(성명:)	③상세()통
	2.기본증명서	①일반()통	②특정 ㉠출생사망실증()통 ㉡인자친생자관계정정()통 ㉢친권미성년후견(□전부 □현재)()통 ㉣개명·성본변경()통 ㉤국적취득상실()통 ㉥성별정정()통	③상세()통
	3.혼인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특정()통 전(前)배우자성명: _____	③상세()통
	4.입양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상세()통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①일반()통 ②상세()통
	6.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	7.수리·불수리증명 ()건		
	8.열람(신고서류) _____년 _____월 _____일 접수 _____ 신고			
	9.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 ①등본()통 ②초본()통 ③열람()건 본적: _____ 호주: _____ 대상자: _____ 의			
	특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선택하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포함 □본(本) 포함]			

[별지 제11-1호 서식]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외교부 여권정보(여권상 로마자성명) 활용에 관한 동의 여부 ¹			여권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신청 대상자	성명	한글			
	등록기준지 ²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발급 통수()통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³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인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³				
			성	명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뒷부분6자리)	<input type="checkbox"/> 전부공개		공개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1.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청대상자만 공개			<input type="checkbox"/> 2.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또는 그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청구사유					
소명자료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 ⁴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신 청 인	성명	한글	⑩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⁵	-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³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소			신청인 자격	의
				휴대전화번호 등	
위 입 인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⑩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⁵	-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위임장은 별도 첨부)				
20 년 월 일					
○○시(구)·읍·면장 귀하					
* 수수료	①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1통당 1,000원 ②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뒷면 참조)				
1. 외교부 여권정보를 활용하여 영문증명서상 본인(신청대상자), 부모, 배우자 및 신청인의 성명을 여권상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민법상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채자재산관리인)이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대상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동의하면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관에서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4.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서,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5.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채자재산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②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 ③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 ④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신고 및 부재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 ⑥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 ⑦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신청 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①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특정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위 공개신청사유 제①,②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가 제한됩니다.

4.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표기하는 경우, 여권상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다른 경우에도 여권상 로마자성명으로 표기됩니다.
5. 등록부에 출생장소 기록은 있으나 국내인지 외국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미상이나 불상 등으로 기록된 경우, 그 밖에 출생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장소가 “(Unspecified)”로 현출됩니다.
 [예시] 제주도에서 일본국 대판향으로 항해 중 → (Unspecified)
 [예시] 미상 → (Unspecified)
6. 배우자의 사망일을 연월일로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망일이 “(Unspecified)”로 현출됩니다.
 [예시] 2012년 05월 일 미상 → (Unspecified)
 [예시] 2013년 10월 20일부터 23일 사이 → (Unspecified)
 [예시] 2014년 11월 11일 추정 → (Unspecified)
 [예시] 2015년 12월 15일 10시 경 → (Unspecified)

※ 법 제117조: 제14조제1항·제2항·제7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⑦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⑧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⑩ 재해의 발생 등 시·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⑪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⑫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